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로상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

■ 김성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45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 성 회 의 원 안(제221694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도로상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안 제20조제8항)	2

I. 김성회의원안(제2216945호)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회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도로상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안 제2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도로상에 가설건축물¹⁾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에게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²⁾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1) 가설건축물이란,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함.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됨.(자료: 토지e음)

2)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에 착공하여야 함.

한편, 도로를 점용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상기의 허가·신고와 별개로 「도로법」³⁾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

개정안은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최근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⁴⁾가 발생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도로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이하 생략)

4) 사북읍서 16t트럭,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 ‘덮쳐’ 4명 사상(뉴데일리 강원, 2023. 10. 5.)

다만, 개정안 제20조제8항 중 “도로상”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도로상”의 개념이 ① 도로 위에 직접 설치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② 도로에 접한 접도구역⁵⁾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법⁶⁾ 상 건축물은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사실상 모든 가설건축물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도로법」⁷⁾에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사고

5)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된 사항은 「도로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5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